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534398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의 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곽부규, 민태홍, 김성훈
피 고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오슬기
2. 주식회사 C
3. 주식회사 D
4. 주식회사 E
5. 주식회사 F
6. 주식회사 G
7. 주식회사 H
8. I 주식회사
피고 2 내지 8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용민, 추호준
변 론 종 결 2025. 10. 16.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¹⁾

1. 피고들은,
 - 가. 별지 1 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 개작, 복제, 배포, 판매, 수출, 전송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허락, 양도해서는 아니 되고,
 - 나. 피고들의 주소지, 본점, 지점, 영업소, 사무소, 창고에서 사용 또는 보관하고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을 삭제 또는 폐기하라.²⁾
2. 원고에게,
 - 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C 및 피고 주식회사 D(J)는 공동하여

1) 원고와 K 주식회사는 2025. 9. 19. K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은 2025. 9. 22. 피고 주식회사 B에, 2025. 9. 30. 나머지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는데 피고들이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 제6항에 의하여 피고들은 K 주식회사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2)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이나 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다 22535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별지 1 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의 이용 등 금지 및 삭제 등을, 예비적으로 별지 2 목록 기재 각 파일을 삭제하지 아니한 채 별지 1 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행위 등의 금지를 청구하고 있으나(2025. 9. 19.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이러한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그 청구범위가 일부 감축된 것에 불과하여 진정한 의미의 예비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12. 1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C 및 피고 주식회사 E는 공동하여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12. 1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C 및 피고 주식회사 F는 공동하여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12. 1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C 및 피고 주식회사 G는 공동하여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12. 1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C 및 피고 주식회사 H(L)는 공동하여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12. 1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바.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C 및 피고 I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12. 1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M 주식회사)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인터넷 사업, 포털서비스 사업, 통합결제시스템 사업, 고지서청구 및 결제대행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3)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N,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C'라 한다)는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의 관리사무소 등 관리업체에게 관리비 고지서 등을 인쇄·납품하여 수수료를 받는 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4) 피고 주식회사 D(법인등록번호 J, 이하 '피고 D'라 한다)는 고지서, 안내문, 광고물 등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피고 C로부터 영업 일부를 양수한 회사이다.

5) 피고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법인등록번호 L)³⁾, I 주식회사[이하 각 법인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하고, 피고 D, E, F, G, H(진주), I을 통틀어 '피고 서브 대리점들'이라 한다]는 피고 C의 경상남도 지역별 대리점 또는 서브 대리점이다.

나. 원고와 피고 C의 업무공동수행 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 C는 2004. 1. 1. 원고가 피고 C에 공동주택에 관한 각종 오프라인 관리비 고지서를 인터넷, 금융공동망 등 각종 전산망으로 조회하고 납부 및 결제할 수 있는 EBPP(Electronic Billing Presentment and Payment)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EBPP 업무 공동수행 계약(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업무공동수행 계약'이

3) 피고 D와 구별을 위하여 이하 '피고 H(진주)'라 한다.



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업무공동수행 계약에 따라 ① 피고 C는 원고에게 피고 C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매월 관리비 고지 내역, 아파트 단지의 기본 정보 등을 제공하고, ②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위 정보를 제공받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입주민들이 인터넷, 금융공동망 등을 통해 관리비를 조회하고 납부 및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C의 ERP 프로그램 사용 계약 체결 등

1) 피고 C는 2004. 7. 1.부터 2004. 12. 1.까지 사이에 'O'라는 명칭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위 프로그램은 그 기능에 따라 ① O 수납관리, ② O 회계관리, ③ O 검침관리, ④ O 관리비관리, ⑤ O 입주자, 차량관리, ⑥ O 인사, 급여관리, ⑦ O 자산비품관리, ⑧ O 하자보수관리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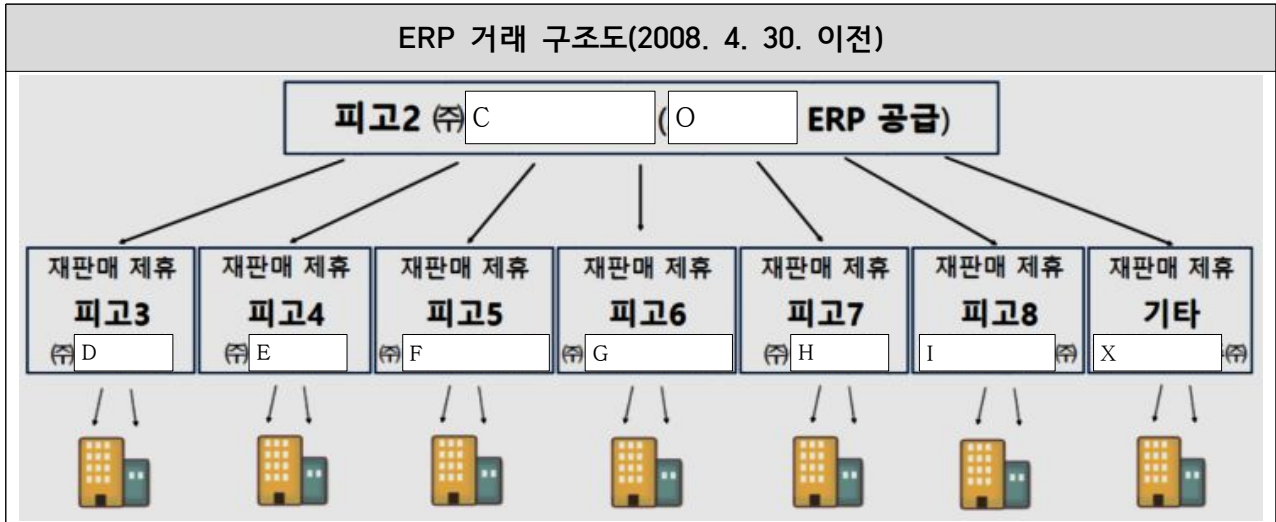
2) 피고 C는 2004. 9. 7.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다음 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프로그램(이하 순번대로 'O 제○ 프로그램'이라 하고, 각 프로그램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통틀어 'O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7. 5. 같은 표 순번 6 내지 8 기재 각 프로그램에 관하여 저작권 등록을 마쳤고, 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 사건 업무공동수행 계약에 따라 원고와 공동으로 관리비 납부 및 결제 업무를 수행하였다.

순번	프로그램 명칭	프로그램 등록번호	프로그램 저작자
1	O 수납관리	P	피고 C
2	O 회계관리	Q	
3	O 검침관리	R	
4	O 관리비관리	S	
5	O 입주자, 차량관리	T	
6	O 인사, 급여관리	U	



7	O 자산비품관리	V	
8	O 하자보수관리	W	

3) 피고 C가 피고 서브 대리점들에게 O 프로그램을 공급한 구조는 다음과 같다.



4) 원고와 피고 C는 2008. 4. 30. 피고 C가 O 프로그램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개발한 공동주택관리 ERP⁴⁾ 프로그램인 'Y'(이후 그 명칭이 Z로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전후를 불문하고 'Z'이라 한다)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 업무제휴 계약(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종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2009. 3. 31. 피고 C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C로부터 O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전부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저작권 양수도계약서(갑 제24호증)를 작성하였고, 2009. 4. 15. O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전부(개작권 포함)에 관하여 저작권 양도 등록을 마쳤다(갑 제3호증의 1 내지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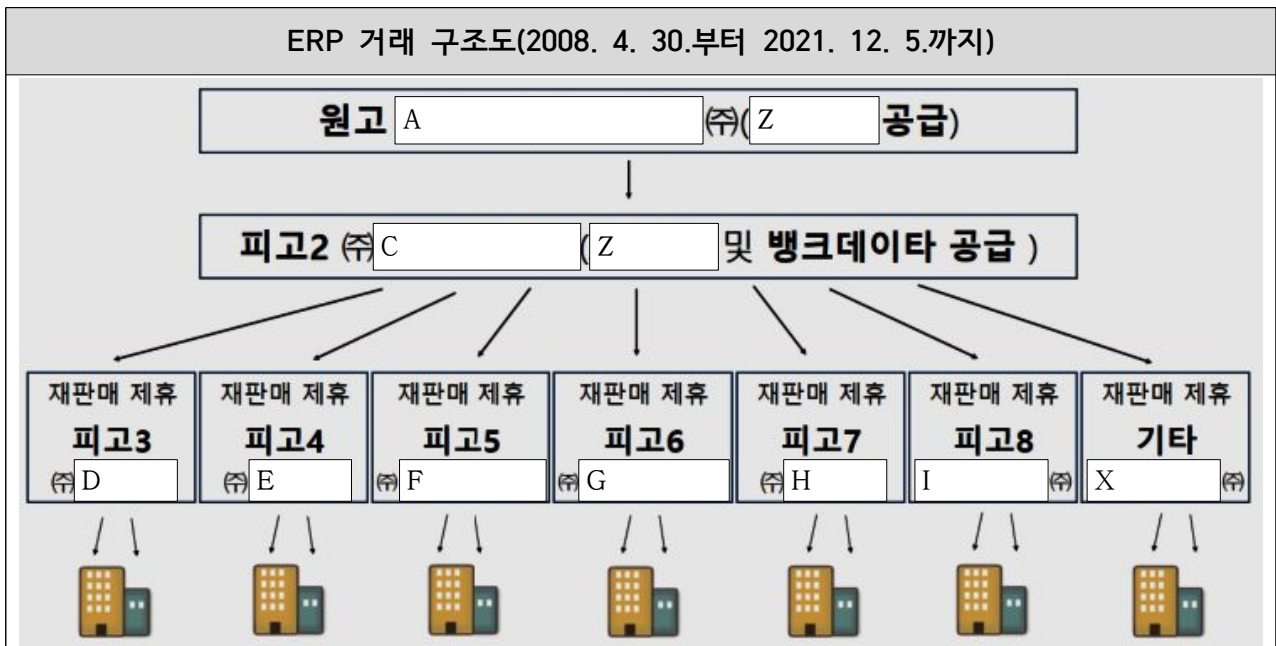
4)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란 기업 내 생산, 물류, 재무, 회계, 영업과 구매, 채고 등 경영 활동 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관리해주며 기업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정보의 생성과 빠른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을 의미한다.



6) 이 사건 종전 계약 체결 이후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이 사건 종전 계약에서 원고가 피고 C에 면제하기로 한 누적 사용료 30억 원에 대한 정산 문제 등으로 갈등이 발생하자, 원고와 피고 C는 2015. 6.경 이 사건 종전 계약을 대신하는 새로운 업무 제휴 계약(갑 제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는 '원고와 피고 C는 이 사건 계약이 새로 체결됨에 의하여 이 사건 종전 계약과 관련한 모든 계약의 효력은 소멸하며, 이 사건 계약으로 대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제7조 제6항).

7) 2008. 4. 30.부터 2021. 12. 5.까지 원고, 피고 C 및 피고 서브 대리점들 사이의 ERP 거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라. 피고들의 Z 사용 중단 및 'AA' 프로그램 사용 등

1) 피고 B는 2020. 7. 1. AB 주식회사(이하 'AB'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B이 AB에게 개발기간을 2020. 7. 1.부터 2020. 12. 31.까지로, 대금을 15억 원으로 정하여 'A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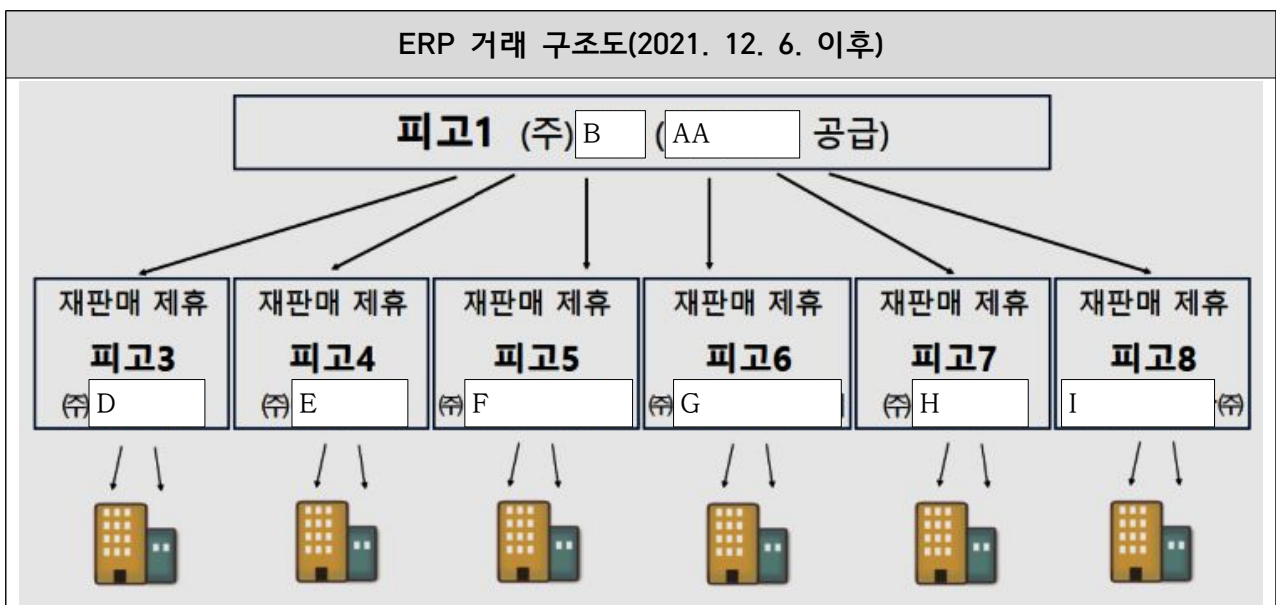


라는 명칭의 컴퓨터프로그램(별지 1 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 이하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제작을 도급하는 내용의 AMS 프로젝트 공급 계약(갑 제38호증, 을가 제2호증의 1)을 체결하였다.

2) AB는 2021. 4.말경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의 개발을 완료하였고, 피고 B은 2021. 5. 3.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에 관하여 저작권등록을 마쳤다(갑 제5호증).

3) 피고 서브 대리점들은 2021. 9.경 피고 C와의 계약을 해지한 후, 2021. 10.경 피고 B과 사이에 아파트관리 전산업무 사업 관련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 11. 24. 부산·경남 지역 아파트 단지에 '2021. 12. 6.부터 피고 B이 제작한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이 서비스되고, 동시에 Z 서비스는 중단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의 공문(갑 제13호증)을 발송하였다.

4) 피고 서브 대리점들은 2021. 12. 6.경부터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서비스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13, 24, 38,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O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하고, 원고는 O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이다.

2)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 중 별지 3 '유사 함수쌍 상세내역' 표의 '비교본 소스 파일'란 기재 각 표현(이하 통틀어 '피고 사용 표현'이라 한다)은 O 프로그램 중 같은 표의 '원본 소스 파일'란 기재 각 표현(이하 통틀어 '원고 사용 표현'이라 한다)을 복제한 것이다.

3) 피고 B는 2021. 4. 27. AB를 통해 무단으로 O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모방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소스코드를 포함하는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을 제작한 후 이를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였다.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은 O 프로그램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느바, 피고 B이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서버에 저장한 행위는 O 프로그램에 대한 원고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4) 피고 C는 소지하고 있던 O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이를 피고 B 또는 AB에게 제공하였느바, 이는 O 프로그램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5)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은 피고 B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고, 피고 서브 대리점들은 2021. 12.경부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로 하여금 피고 B의 서버에 접속하여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 B 및 서브 대리점들의 행위는 O 프로그램에 대한 원고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6)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침해의 정지 및 폐기를 구하고,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청구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은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B의 주장

1)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은 O 프로그램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저작물에 해당한다.

2) 피고 B은 AB와 AMS 프로젝트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 및 그에 관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받았을 뿐이므로, 피고 B에게 저작재산권 침해에 관한 고의 내지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 C 및 서브 대리점들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종전 계약에 따라 피고 C로부터 O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가 이를 양도받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체결로써 위 저작재산권은 피고 C에게 원시적으로 복귀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원고를 O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은 O 프로그램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저작물에 해당한다.

3) 피고 C는 피고 B 내지 AB에게 O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전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3. 원고가 O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가 이 사건 종전 계약에 의하여 O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을 양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종전 계약에 따라 피고 C로부터 O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C 및 서브 대리점들은 이 사건 종전 계약에는 피고 C가 원고에게 O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C가 원고에게 O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7, 25, 26,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종전 계약에 따라 피고 C로부터 O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종전 계약의 별첨 사항 제1항은 "피고 C는 원고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주택, 상가 및 빌딩 등의 영업 및 서비스를 원고의 Z로 전환함에 있어 상호 신뢰와 성실한 계약 이행을 목적으로 '제품'을 원고에게 무상 양도하며 2010. 4. 30.까지는 기존 제품의 운영에 관해서는 원고와 협의해서 행해나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피고 C가 원고에게 '제품'을 원고에게 무상 양도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종전 계약은 '제품'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종전 계약의 별첨 사항 제1항은 피고 C로 하여금 O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정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종전 계약 제2조 제3항은 '피고 C는 기존 제품에서 원고의 Z로 전환 영업 및 서비스하는 본 계약의 준수를 위하여 기존 제품의 향후 처리 문제는 별첨으로 규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별첨 사항은 '기존 제품'의 처리 문제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종전 계약의 '기존 제품'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거나 계약 당시 소유 예정 또는 개발 중인 ERP 관련 시스템을 통칭"하는 것(제2조 제2항)으로서 'O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별첨 사항 제2항은 '원고는 피고 C의 전환 스케줄에 맞도록 무상양도 받은 기존 제품의 운영을 피고 C와 공동으로 관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문언 자체로 '기존 제품'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었다고 해석된다.

(4)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종전 계약 체결 시점 1년까지의 기존 제품 및 Z의 사용료는 면제하고, 이 사건 종전 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Z 사용료 및 위 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관리세대 사용료가 누



적으로 30억 원이 되는 시점까지는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그 사용료를 면제하여 주기로 하였는바(이 사건 종전 계약 제7조 제1항), 이는 원고가 피고 C로부터 기존 제품(O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나) 원고와 피고 C는 2009. 3. 31. 피고 C가 원고에게 O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전부)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저작권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O 프로그램에 관하여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쳤다. 피고 C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종전 계약 체결함으로써 O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바 없음에도 위와 같은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로 하여금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치도록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2020. 11. 24. 피고 C에게 '피고 C의 O 프로그램 파기 의무 불이행 및 무단 사용은 이 사건 계약 위반에 해당하고, 피고 C가 원고 소유의 O 프로그램과 유사한 AC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등록한 행위는 이 사건 계약 위반 행위, 불법행위 및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을 구하는 내용증명(갑 제26호증의 3)을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 C는 2020. 11. 27. 원고에게 'AC에 대한 등록 말소 절차를 완료하였고, 원고와 협의한 기간 이후 O 관련 어떠한 서비스도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O 프로그램은 서비스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다.'고 회신하였을 뿐, 원고에게 O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바 없다는 등 원고가 O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 C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7945호,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9303호)에서 원고가 피고 C가 O 프로그램과 유사한 AC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등록을 마친 행위가 이 사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자 피고 C는 원고로부터 O 프로그램에 관한 라이선스 사용계약 확인서를 받아 AC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등록을 마쳤는바, 이 사건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반박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 C의 주장은 원고가 O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자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C 및 서브 대리점들은, 설령 이 사건 종전 계약으로 O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O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은 원시적으로 피고 C에 복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민법 제548조 제1항), 이 사건 종전 계약을 전제로 한 2009. 3. 31. 자 프로그램저작권 양수도계약서 및 2009. 4. 14. 자 저작재산권 양도등록 역시 원시적으로 무효가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민법 제548조 제1항은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해제의 효과로서 계약의 각 당사자가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는 것인데, 이 사건 종전 계약이 해제된 바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법률관계에 민법 제548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6항이 '원고와 피고 C는 이 사건 계약이 새로 체결됨에 의하여 이 사건 종전 계약과 관련한 모든 계약의 효력은 소멸하며 이 사건 계약으로 대신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법률관계는 이 사건 종전 계약이 아니라 이 사건 계약에 의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종전 계약이 원시적으로 무효가 되어 위 종전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법률관계까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C



및 서브 대리점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종전 계약에 따라 피고 C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O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그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저작자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정리하여 기술하였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잘 정리하여 저작자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론, 학설, 관련 용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풀이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적을 저술하였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

다만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의 표현과 동일·유사한 경우는 물론 기존 이론이나 개념을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의하여 설명하거나 정리한 경우 또는 논리구성상 달리 표현하기 어렵거나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



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복제권 등의 침해도 인정될 수 없다.

한편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작권법 소정의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어문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대방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원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복제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원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70537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도9459 판결의 취지 참조).

2)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8467 판결 참조).

나.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1) 쟁점의 정리

앞서 본 바와 같이 ○ 프로그램은 8개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하위 프로그램은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프로그램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하위 프로그램 각각이 개별적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당초 별도로 하위 프로그램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의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 제작·사



용 등이 O 프로그램 전부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O 프로그램 전부와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 사이의 소스코드 유사성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였고, 감정인은 O 제1, 3, 4 프로그램의 일부(원고 사용 표현)가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의 일부(피고 사용 표현)와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후 원고는 원고 사용 표현이 O 제1, 3, 4 프로그램에서 가지는 양적·질적 비중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과 O 제1, 3, 4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O 제2, 5 내지 8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내지 O 제1, 3, 4 프로그램 중 원고 사용 표현을 제외한 나머지 소스코드가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이 O 제1, 3, 4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2) 판단의 기준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로서(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지시·명령에 해당하는 수많은 소스코드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지시·명령은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언어적 형태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어문저작물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며, 컴퓨터프로그램도 저작물로 보호되는 이상 다른 저작물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여 아이디어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컴퓨터프로그램과 이를 구성하는 소스코드는 그것이 목적으로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표준적인 용



어와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표현방식이 상당히 제한되는 기능적 저작물로서의 특성을 가지므로, 이러한 특성 또한 컴퓨터프로그램들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앞서 본 복제권 침해 기준에 관한 법리에 따르면, 복제권 등 침해 여부는 ○ 프로그램 중 원고 사용 표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사용 표현이 원고 사용 표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복제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 프로그램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 등을 고려하여 ○ 프로그램과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 간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요컨대, 피고 사용 표현 중 일부가 창작성 있는 원고 사용 표현 중 일부에 의거하여 작성되고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 프로그램에 관한 복제권 등을 침해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3) 원고 사용 표현의 창작성 및 의거관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별지 3 기재 각 원고 사용 표현은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고, 해당 피고 사용 표현이 위 원고 사용 표현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 프로그램의 명령문 중 일부가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에 주석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일한 함수 이름(AD)과 변수 이름(AE)이 발견되며, 각 변수의 의미를 설명하는 주석(AD Call 시 처리, AF 등)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나) ○ 프로그램은 VB.NET, 자바(JAVA) 및 자바스크립트(Javascript, JS) 언어로 작성된 반면,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은 C# 및 자바스크립트(Javascript, JS) 언어로 작



성되었는데,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의 주석에 O 프로그램의 VB.NET 코드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 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감정인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O 프로그램과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 사이에 의거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 사용 표현은 대외 금융관리 및 고지서 출력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함수로서 그 과정에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의 요청에 따라 외부 연동을 위해 지정한 형식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유사한 로직과 변수 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거나 낱짜 처리, 끝전 처리(반올림, 절사, 절상), 문자열 처리(정렬, 길이 단위 추출) 등을 위한 함수로서 매우 단순하여 창작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능"은 아이디어 또는 동작의 개념인 반면, "소스코드"는 그 기능을 구현하는 표현(문장, 구조, 변수, 문법)이므로, 단순하거나 일반적인 기능을 수행하거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라고 하여도 반드시 동일한 구문, 구조, 변수명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감정인은 O 프로그램과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에서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오픈소스 및 자동 생성 코드를 제거한 후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비교 감정을 실시한 점(감정서 9, 10면), 원고 사용 표현과 동일한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음을 인정할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판단

앞서 3)항에서 인정한 사정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 사용 표현은 원고 사용 표현과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관하여는 피고들도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성이 인정되는 소스코드가 불가피하게 동일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 제1, 3, 4 프로그램과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에서 확인되는 피고 사용 표현이 창작성 있는 원고 사용 표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이고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이 O 제1, 3, 4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O 제1, 3, 4 프로그램의 서버 소스코드와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의 서버 소스코드 간의 유사도는 O 제1, 3, 4 프로그램 기준 12.8% 내지 19.3%로 수치상으로 그다지 높지 않다.

나) O 프로그램을 C# 코드로 변환하였을 때, 20줄 이상의 함수가 O 제1 프로그램에서 561개, O 제3 프로그램에서 1,511개, O 제4 프로그램에서 1,120개 합계 3,192개가 추출되는데, 그중 유사 함수쌍으로 인정된 원고 사용 표현은 47개(= O 제1 프로그램 13개 + O 제3 프로그램 1개 + O 제4 프로그램 33개)에 불과하다(감정서 23, 24면). 이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유사율은 O 제1 프로그램 기준 2.32%(= 13개/561개 × 100)⁵⁾, O 제3 프로그램 기준 0.07%(= 1개/1,511개 × 100), O 제4 프로그램 기준 2.95%(= 33개/1,120개 × 100)에 불과하다.

5)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같다.



다) 함수쌍의 개수가 아니라 소스코드의 라인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유사율은 ○ 제1 프로그램 기준 9.62%(= 5,938라인/61,734라인 × 100), ○ 제3 프로그램 기준 0.69%(= 1,260라인/183,481라인 × 100), ○ 제4 프로그램 기준 11.10%(= 18,283라인/164,658라인 × 100)에 불과하다.

라) 앞서 가) 내지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제1, 3, 4 프로그램과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 간의 유사도는 수치상으로는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실질적 유사성의 평가는 단순히 유사도의 정량적 평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독창성이 높은 핵심적 기능 부분이 유사할 경우 인정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사용 표현이 독창성이 높은 핵심적 기능 부분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 프로그램 또는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과 같은 공동주택 ERP 프로그램의 경우 관리비 부과 및 수납이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구성에 해당하는데, 원고 사용 표현은 위 관리비 부과 및 수납에 관한 것이어서 ○ 프로그램에서 가지는 질적 비중이 높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하나의 컴퓨터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 소스코드의 질적 비중은 그 소스코드가 컴퓨터프로그램 전체의 품질과 동작에 끼치는 영향력, 즉 해당 소스코드가 컴퓨터프로그램의 핵심 논리를 얼마나 담당하고, 유지보수성 내지 안정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원고 사용 표현이 ○ 제1, 3, 4 프로그램의 핵심 논리, 유지보수성 및 안정성 등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별지 3 순번 1, 13, 18 기재 원고 사용 표현은 금액 단위별로 결전처리(절상, 절하, 반올림)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인데, 이는 기능이 명확하고 단순하여 소



스코드의 표현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의 유사성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분들이 독창성이 높은 핵심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별지 3 순번 2, 16 기재 원고 사용 표현은 8자리 문자열로 되어있는 날짜 형식(YYYYMMDD)을 입력하면 연, 월, 일 사이에 하이픈(-) 표시를 더하거나 '년', '월', '일' 표시를 더한 형태로 표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에 해당하는데, 이는 "'YYYYMMDD' 형식의 문자열을 받아 원하는 날짜 형식(YYYY-MM-DD 등)으로 바꾼다."는 것으로서 단순한 문자열 조작에 해당한다. 이러한 부분은 동일한 내용을 표현하여야 하고, 해당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가 거의 유일하여 소스코드의 표현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의 유사성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분들이 독창성이 높은 핵심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별지 3 순번 15, 20, 24, 30, 33, 47 기재 원고 사용 표현은 한글이 포함된 문자열에서 길이를 구하거나, 문자열을 추출하거나, 문자를 변환하거나 문자열을 좌우측을 정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 또한 단순하고 흔한 유틸리티 함수에 해당하여 소스코드의 표현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들이 독창성이 높은 핵심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O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침해 주장은 피고들의 구체적 행위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⁶⁾

6) 한국저작권위원회의 2024. 10. 10. 이 사건 감정결과 제출 이후 이 법원이 2024. 10. 23. '감정과정이나 결과에 불명확한 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한 후, 2024. 11. 20.까지 요약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을 석명하였던 점 등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18

그렇다면 저작권 침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규영

 판사 이경효

 판사 이상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18

별지 1

목록

프로그램명 :

등록번호 :

등록일 :

등록권자 : 주식회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18

별지 2

목록

순번	파일명	파일경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